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변경〉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2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3
[참고]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성권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6. 19.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수출입 지원 목적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산의 수출입 기업 지원을 비롯해 부산의 기존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의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 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 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u>서울특별시</u>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 가능	○ 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 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u>부산광역시</u>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¹⁾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금융공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률에 지역을 명시하는 경우, 정관으로 위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련 법률 규정 사례]

구분	기관명	법률 규정
법률에 지역을 명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u>서울특별시</u> 에 둔다.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u> 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u>서울특별시</u> 에 둔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구 분	기관명	법률 규정
	중 소 기 업 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 에 둔다.
	예 금 보 험 공사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에 둔다.
	국 민 연 금 공단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장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로 한다. *개정 전: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 관에 위임	한 국 투 자 공사	한국투자공사법 제3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한다.
	한 국 토 지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한다.
	한 국 전 력 공사	한국전력공사법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한다.
	한 국 자 산 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한다.
	주 택 도 시 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법 제1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한다.
	중 소 벤 처 기업 진 흥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 국 주 택 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전: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에 둔다.
	신 용 보 증 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전: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본점을 서울특별시 에 둔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주된 사무소(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²⁾.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당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함.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2014년 9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11월 신용보증기금이 대구로 이전했으며 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부산·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우, 2007년 12월에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이 금융중심지로 지정³⁾된 후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까지 유지되고 있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 부산광역시로 기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과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

2)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2009년 6월, 2010년 1월에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돼 2014년 12월에 지방 이전이 완료됨.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던 내용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이 2014년 9월 발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67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678)]돼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결과”, 2009.1.21.

서울은 이미 금융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경영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지정했으며, 부산은 증권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이 위치해 있고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중심지로 지정함.

로 보이는 등 국제경쟁력 및 집적효과를 아울러 고려하고자 하는 「금융중심지법」 및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부합할 것으로 보임.

다만, 금융공공기관 이전은 수출입은행 업무의 효과성 측면과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시에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효율성 분석 등 사례연구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해 관계자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합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효과와 함께 국책 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 국가 금융경쟁력 강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대부분의 수출기업, 국내외 금융기관 및 주요 협력국 대사관 등이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대외원조(EDCF) 및 남북협력

4)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했다는 연구(KCI 등재)가 있음. 서민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효율성 분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2호, 2021, p. 21.

※ 참고로 한국부동산원의 대구 이전 이후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연구(KCI 등재)도 있음. 박인정, 박유정, 모민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성공적인가: 한국부동산원 사례 분석’, 「정부회계연구」 제19권 제4호, 2021, p.33.

기금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에 소재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편, 주요국의 수출금융기관 본점은 수도에 위치하고 있음⁵⁾.

참고로 제21대 국회 당시 송기현·서병수·김두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를 각각 정관에 따라·부산광역시·대한민국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20대 국회 당시 김광수·김두관·김해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를 각각 전라북도·정관에 따라·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 된 바 있음.

5) [참고]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① 수 출입은행은 본점을 <u>서울특별시</u> 에 둔 다. ② (생략)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① --- ----- <u>부산광역시</u> ----- -. ②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9

참 고

주요국 수출금융기관 본점 소재지 및 법률 명시 여부

국 가	기관명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법률 명시 여부
미 국	US EXIM	워싱턴(수도)	X
영 국	UK Export Finance	런던(수도)	- (정부부처)
캐나다	Export Development Canada	오타와(수도)	○
중 국	Export-Import Bank of China	북경(수도)	○
일 본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도쿄(수도)	X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
인 도	Export-Import Bank of India	뉴델리(수도)	○